

의안번호	2218021
의 퇴 인	박선원의원
회 답 일	2026.9.11.
추계번호	26D0970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 (정의)	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에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에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포함(제1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 확대(안 제2조)

-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에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에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특수임무수행자 수가 확대될 경우, 이 법 제6조에 따라 근무시기, 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과 공로금 등을 지급하게 되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이 법 시행령 [별표1의2]에 따르면, 보상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시기와 임무의 종류, 특수임무 종결 형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10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지급비율을 10%~100%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음
 - 또한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로금은 채용·입대경위, 교육훈련여건, 특수임무종결일 이후의 처리사항 등을 고려하며, 가산공로금은 사망·행방불명·장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

하여 산정함

- 특수임무수행자 전체의 1인당 평균 보상금(공로금 등 포함) 지급액은 1.15억원이며, 교육훈련자 평균 1인당 보상금 지급액은 1억원임

[표 1] 연도별 보상인원 및 보상금(공로금 등 포함) 지급액

(단위: 명, 억원)

구 분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
보상 인원	731	1,028	1,062	1,193	959	476	350	281	69	4	49	98
지급 금액	822	1,237	1,045	1,300	1,039	546	438	390	83	64	89	132
1인당 지급금액	1.12	1.20	0.98	1.09	1.08	1.15	1.25	1.39	1.20	16.00		1.82
구 분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	2026	계	
보상 인원	138	29	27	92	161	34	0	0	30	52	6,797	
지급 금액	118	35	46	122	159	22.4	2.3	1.7	77.6	71.6	7,841.3	
1인당 지급금액	0.86	1.21	1.70	1.33	0.99	0.66	-	-	2.59	1.38	1.15	

자료: 국방부

- 국방부에 따르면, 해군 UDT 1기(1955년)~17기(1971년)까지 UDT(B-6과정)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육군·공군·해병대 위탁교육(60여명)을 포함하여 440여 명이며,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과 공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320명임
 - 1971년까지 UDT 교육훈련을 받은 440명 중 117명이 해군 첩보부대로 전속되었으며, 이 중 보상신청자 88명이 보상을 받았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보상금과 공로금을 받을 수 있는 320명에 대한 당시 지급급여, 근무기간, 채용·입대경위, 교육훈련여건, 특수임무종결일 이후의 처리사항, 장애여부, 특수임무종결형태 등 개인별 자료의 부재로,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